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■ 변경대상 : 하나UBS 신경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펀드명	하나UBS 신경제코리아증권투자신탁 (제1호)[주식]	하나UBS 신경제 <u>그린</u> 코리아증권투자 신탁(제1호)[주식]
제3조(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 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 UBS신경제코리아 증권투자신탁 (제1호)[주식]"으로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 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 UBS신경제 <u>그린</u> 코리아 증권투자 신탁(제1호)[주식]"으로 한다.
제16조(투자목 적)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(특히, 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수 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)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<u>국내 주식(특히, 정 부의 녹색성장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 식)</u>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17조(투자대 상자산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 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 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 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 모주등에 한한다)(이하 “주 식”이라 한다) 1의2. 제1호의 주식을 발행한 기 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 업을 “정부정책 수혜예상주식”이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 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 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 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 모주등에 한한다)(이하 “주 식”이라 한다) <u>1의2. 제1호의 주식을 발행한 기 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 업을 “ 녹색성장 경제정책 수혜</u>

	<p>라 한다.</p> <p>가. 지주회사 제도 등 규제 완화 관련 기업 : 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” 등 지주회사 관련 제도 완화, 금산분리 및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등의 규제완화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 <p>나. 금융산업 변화 및 재편 관련 기업 : 금융지주회사 제도 등 금융산업 관련제도, 국책은행 민영화 등의 정책변화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 <p>다. 환경산업 관련 기업 : 세계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 <p>라. 에너지 관련 기업 : 에너지자원개발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 <p>마. 기타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	<p><u>예상 주식</u>”이라 한다.</p> <p>가. <u>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</u> : 태양광, 풍력, 지열, 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 <p>나. <u>탄소배출권 및 친환경산업 관련 기업</u> : 탄소배출권 관련 기업, 폐기물처리 관련 기업, 물관련 기업 등 탄소배출권 확보 및 다양한 친환경 관련 사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 <p>다. <u>에너지 저장 관련 기업</u> : 이차전지, 전기/하이브리드 카 등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사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 <p>라. <u>에너지 효율 관련 기업</u> : 통신망, 송전/배전, LED 등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p> <p>마. <u>향후 정부의 녹색성장 및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</u></p>
--	---	--
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	<p>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하며 정부정책 수혜예상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p>	<p>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하며 <u>녹색성장 경제정책 수혜예상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</u></p>
<p>부 칙</p>	<p>(신 설)</p>	<p>이 신탁계약서의 효력발생일은 2009년 6월 5일로 한다.</p>